

임마누엘 침례교회 규약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: 명 칭

본 교회는 임마누엘 침례교회(이하 교회라 한다)라 하며 1815 E. Center St. Anaheim, California 92805 에 위치한다.

제 2 조 : 목 적

본 교회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말씀으로 믿으며, 오직 성경만이 모든 믿음과 행동의 기준이 되며 교회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며 다음의 일들을 시행한다.

- 1) 정기적인 예배와 집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한다.
- 2)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파하여 개인의 구원을 증거 한다.
- 3)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살도록 계속 격려한다.
- 4)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사역의 참여를 위해 지도자를 발굴 양육한다.
- 5)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확립하고 전파한다.

제 3 조 : 소 속

본 교회는 미국 남 침례회 총회(Southern Baptist Convention) 소속 교회가 되며, 남 침례회 남 가주 한인 교회 지방회와 Orange County Southern Baptist Association 에 가입하여 이민사회와 지역사회 및 세계선교에 협력한다.

제 4 조 : 신앙고백

본 교회는 2000년 6월 14일 미국 남 침례회 총회에서 수정 가결한 “ 침례교인의 이상과, 신앙 및 메시지”(The Baptist Faith and Message, June 14, 2000)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.

제 2 장 교회의 회원

제 5 조 : 회원의 구성

본 교회의 회원은 침례교인과 등록교인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항) 침례교인

- 1)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
- 2) 성경적인 침수침례의 예식을 받은 사람
- 3) 본 교회의 규약을 준수하여 제 집회에 출석, 기도, 헌금, 봉사등으로 교회를 통한 복음 사역에 협력하기를 원하는 사람

2항) 등록교인

- 1)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

제 6 조 : 가입 및 이명

- 1항)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출석교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회원이 된다
- 2항) 본 교회와 신앙노선이 합치되는 교회에서 이명을 원하는 사람은 이명 증서를 첨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앙체험과 침례경위를 진술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.

제 7 조 : 회원의 임무

본 교회의 회원이 된 교인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일을 이행한다.

- 1항) 각 집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개인의 신앙향상과 성도의 교제에 힘쓴다.
- 2항) 십일조 혹은 주정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다.
- 3항) 주일 성경공부 모임과 제자훈련 그리고 개인전도에 힘쓴다.
- 4항)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헌신하여 교회봉사에 힘쓴다.

제 8 조 : 회원의 권리

본 교회의 회원이 된 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주님의 만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침례교인은 사무총회의 결의권 및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 9 조 : 회원의 제명조건

다음의 조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

- 1항) 일반 제명 조건
 - 1) 본인의 사망 혹은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이명 증서를 허락한 경우
 - 2) 본인이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제명을 원할 경우
- 2항) 특수 제명 조건
 - 1) 본 교회에 만 1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교인의 임무를 등한히 한 회원
 - 2) 본 교회의 신앙노선에서 탈선하여 교인의 신분을 망각했다고 인정되는 회원

제 10 조 : 제명방법

제명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명한다.

- 1항) 일반 제명 조건에 해당한 회원은 목회협력 위원회에서 가결하여 교회에 보고한다.
- 2항) 특수 제명 조건에 해당한 회원은 마태복음 18:15 - 17에 의거하여, 목회협력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출석 인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단 제명 해당자는 심의 기간 중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3항) 목회협력 위원회는 제명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즉시로 심사를 거쳐 교회에 보고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회원으로 회복시킨다.

제 3 장 교회의 직원

제 11 조 : 교회는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그리고 유급 혹은 무급의 목사와 사무직원을 두어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사무 행정과 복음사업을 담당케 한다.

제 12 조 : 담임목사의 자격

본 교회 담임목사는 본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의 실무를 익히고 성경적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단이 정한 법에 의해 목사로 안수 받은 자라야 한다.

제 13 조 : 목사의 임무

- 1항) 목사는 정기적인 예배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전파 및 기도와 각종 예식 거행과 각 교인들의 신앙향상을 위한 목회에 힘써야 한다.
- 2항) 목사는 교회 소유의 모든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행사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비성경적인 행사나 모임을 주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임될 수 있다.
- 3항) 교회 사무총회의 장으로써 교회를 대표하며 각 기관을 통한 행정을 감독, 관리한다.
- 4항) 교회의 모든 사무직원을 총 관할하며 또한 목회협력 위원회와 사무총회에 직원의 해임 또는 채용을 건의한다.

제 14조 : 목사의 청빙

- 1항) 교회는 목회협력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목사를 청빙하되 사무총회에서 출석교인의 3/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2항) 목사의 청빙을 위한 사무총회는 소집 전 최소한 2주일간 연속하여 광고하여야 한다.
사무총회에서는 광고한 목사에 관해서만 심의할 수 있으며, 청빙추천은 단일후보

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5조 : 목사의 인사

교회 혹은 목사는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권고사면 혹은 사직을 통고할 수 있다.
단 권고사면에 관한 표결은 목회협력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표결 전 최소한 2주일간
광고하여 사무총회에서 출석교인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.

제 4 장 집 사

제 16 조 : 집사의 종류

본 교회는 침례교회의 원리에 입각하여 안수집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회의
결의에 따라 서리집사도 둘 수 있도록 한다.

제 17 조 : 안수집사

1항) 안수집사의 임무

- 1) 목사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한다.
- 2)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전반에 모범을 보여 성도들의 본이 된다.
- 3)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교회의 재정을 책임진다.

2항) 안수집사의 자격

- 1) 사도행전 6:3 과 디모데전서 3:8-13에 준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.
- 3) 부부가 함께 교회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.
- 4) 다른 교회에서 장로 및 안수집사나 권사(남자)로 시무한 자로서 본 교회의 회원
으로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

3항) 안수집사의 선출

목회협력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사무총회의 출석교인 2/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
한다. 단 안수의 절차와 예비훈련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4항) 시무임기

안수집사의 시무임기는 6년으로 하며, 6년이 경과되면 1년이 지난 후에야 사무총회
에서 시무투표를 받아 재 시무할 수 있다. 단 목회협력 위원회의 2/3 이상의
추천과 사무총회에서 출석교인 2/3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시무할 수도 있다

제 18 조 : 서리집사

1항) 서리집사의 임무

- 1) 교회의 모든 봉사과 헌신의 생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- 2)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2항) 서리집사의 자격

- 1) 본 교회의 회원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21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
- 2) 본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다른 교회에서 집사 및 권사(여자)로 시무한 사람으로
회원이 된지 6개월이 지난 사람

3항) 서리집사의 선출과 임명

- 1)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목회협력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회에서
가결하여 임명한다.
- 2) 서리집사의 시무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계속해서 임명할 수 있다

제 5 장 회 의

제 19 조 : 사무총회의 성격

- 1항) 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며 교회의 모든 기관들은 사무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. 단 교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무총회는 그 임무를 목회협력 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한다.
- 2항) 사무총회는 년 사무총회와 임시 사무총회로 구분한다.

제 20 조 : 사무총회의 구성

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18세 이상의 충성된 교인으로 **침례를 받은 회원**들로 구성하며 성원은 회의 당일에 출석하여 참석한 교인 수로 한다.

제 21 조 : 사무총회의 소집

- 1항) 년 사무총회는 운영세칙에 지정된 날짜에 담임목사가 소집하며, 임시 사무총회는 소집 전 토의 안건을 2주일 전에 미리 광고한 후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2항) 임시 사무총회의 소집은 목사 또는 목회협력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나, 본 교회회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사무총회 의장이 소집한다.

제 22 조 : 사무총회의 임무

사무총회는 중요한 인사문제, 예산의 심의 및 결산 등의 중요한 안건을 다루며, 각 기관의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.

제 23 조 : 목회협력 위원회의 구성

목회협력 위원회는 목사, 시무 안수집사와 사무총회에서 위임한 각 기관장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

제 24 조 : 목회협력 위원회의 임무

- 1항) 목회협력 위원회는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영적생활과 교회부흥에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핵심 기관이 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.
- 2항) 목회협력 위원회는 사무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사무를 이행하고 또 교회의 제반사무를 계획하고 그 집행방법을 연구하여 시행하고 사무총회에 보고 한다
- 3항) 목회협력 위원회는 각 부와 각 기관의 년 중 행사를 종합검토하며 사업계획과 수행한 사업을 재검토하여 앞날의 발전을 도모 한다

제 6 장 교회기관

제 25 조 : 교회는 기관으로 예배, 선교, 교육, 봉사, 관리, 재정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목회협력 위원회에서 조직하여 사무총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한다.

제 26 조 : 교회의 각 교육기관의 교재와 운영은 미 남 침례교단의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.

제 27 조 : 각 기관의 기관장

각 기관의 기관장은 본 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목회협력 위원회에서 추천 하거나, 각 자치 기관에서 선출하여 사무총회의 인준을 받아 교회에서 임명하도록 한다.

제 7 장 교회재정

제 28 조 : 본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십일조와 주정헌금 그 외의 각종 헌금으로 충당 한다

제 29 조 : 지출과 예산
교회는 재정부와 목회협력 위원회가 준비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사무총회에서 가결 한다
모든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되 최소한 2인의 서명을 구비한 청구서에 의하여 교회의
수표로만 집행한다.

제 30 조 : 재정 감사
교회는 집행된 일체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최소 년 1회 이상의
재무감사를 하여 교회에 보고한다.

제 8 장 교회건물 사용 규정

제 31 조 : 본 교회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의 봉사를 원할 때에는 교회가 정한
서류를 작성해서 신청 한 후에 목회협력 위원회나 사무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2 조 : 교회 건물을 사용할 때나 고용직원이 봉사할 때에는 본 교회의 규약이나 목적에 맞지
않거나 다음의 사항일 경우에는 신청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.
1항) 본 교회의 성도나 가정이 사용할 날짜와 장소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.
2항) 가정 행사의 경우에도 성경적인 가정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.
3항) 결혼 및 예식의 경우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경적인 결합일 때에 사용을 허가한다.
4항) 본 교회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교회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.
5항) 본 교회의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일체의 행사는 허가하지 않는다.
6항) 만약 본 교회의 직원이 위의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당사자는 즉시 해임될 수 있으며
이미 허가된 내용들도 취소 할 수 있다.

제 9 장 부 칙

제 33 조 : 본 규약에 기록되지 않은 조항은 미국 남 침례교회의 관례에 따르며 본 규약에 기록
되지 않은 기관이 필요할 시에는 목회협력 위원회의 인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

제 34 조 : 본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시행 한다

제 35 조 : 본 규약의 개정은 목회협력 위원회의 3/4 이상의 추천 혹은 재적교인 1/3 이상의
서명을 받아 성문화된 개정 초안을 교인에게 배부하고 최소한 2주일간 광고한 후에
출석교인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사무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

제 34 조 : 본 규약은 통과된 일시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

2015년 7월 26일 주일 개정

임마누엘 침례교회

운 영 세 칙

- 제 1 조 : 교회의 사무총회 일자
년 사무총회는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소집한다.
단 임시 사무총회는 목회협력 위원회나 교인들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.
- 제 2 조 : 표결방법
목사의 청빙이나 권고사면, 안수집사 선출, 특수제명, 규약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외에는 당시 회의의 결정에 의한다.
목회협력 위원회에서 인사에 관계된 표결은 언제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인원의 2/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- 제 3 조 : 목회협력 위원회의 소집
정기 목회협력 위원회는 사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한다.
임시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
- 제 4 조 : 목회협력 위원회의 성원
목회협력 위원회의 성원은 사무총회 성원과 달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.
- 제 5 조 : 회계연도
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 년 10월 1일부터 명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
- 제 6 조 : 현금봉투의 개봉과 기록
현금봉투의 개봉은 최소한 2인 이상의 재정부원 입회하에 행하며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관하며 개인의 현금액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7 조 : 교회 건물의 사용과 직원들의 봉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교회의 규약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. 만일 본 교회의 직원의 실수로 부당한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도 목회협력 위원회나 사무총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 될 수 있으며 교회직원은 즉시 해임할 수 있다. 교회사용 허가 신청서에는 사용 허가를 기일 내에 취소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서명을 받는다.
- 제 8 조 : 운영세칙 개정과 효력
1항) 운영세칙의 개정은 교회 규약수정 조항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
2항) 본 운영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2015년 7월 26일 주일 개정

임마누엘 침례교회